

2023년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주관기관 모집 공고

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역자원의 특성을 결합한 차별화된 로컬 콘텐츠를 개발하고, 로컬창업에 필요한 체계적 계획 및 현장 경험을 갖춘 잠재력 있는 예비창업자 육성을 위한 『로컬콘텐츠 중점대학』의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3년 1월 18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※ 본 모집공고는 로컬콘텐츠 중점대학을 운영할 주관기관을 모집하는 공고문이며, 로컬콘텐츠 중점대학은 주관기관 선정 후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.

1

주관기관 모집개요

□ 추진목적

- 전문가, 지원 인프라 등을 보유하고 연계 가능한 로컬사업 등을 수행하는 주관기관 모집을 통한 원활한 사업운영 및 사업성과 제고

□ 선정규모 및 예산

- 선정규모 : 1개 기관 내외

※ 선정평가 결과 적합한 기관이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
※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컨소시엄 불가

- 사업기간 : 협약 체결 시 ~ '23. 12. 31.

※ 추후 운영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 및 협약완료일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
※ 중간평가, 성과평가 등을 통해 사업수행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수행 중 신청 제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도에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

- 지원예산 : 28억원 내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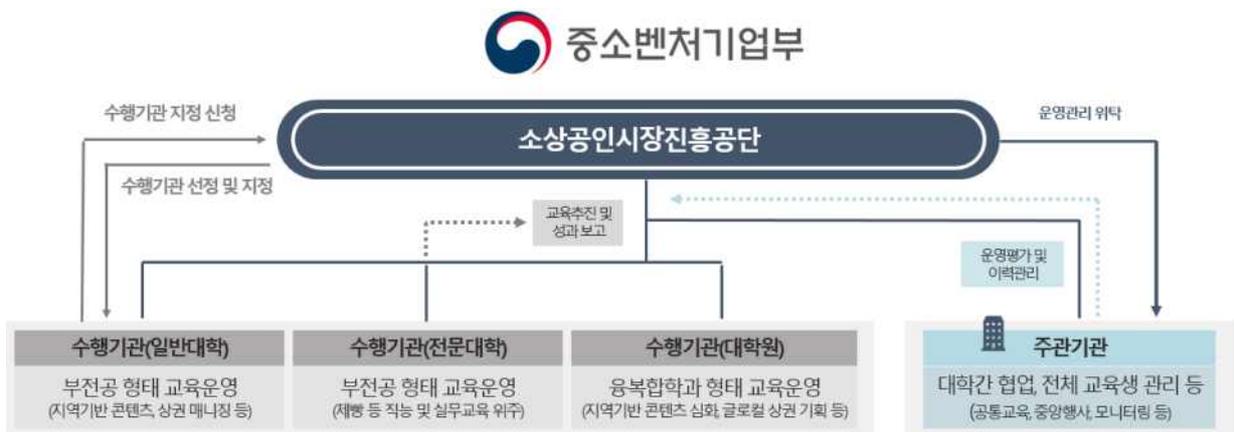
※ 수행기관(대학)별 교육비, 수행기관 운영·관리, 공통교육, 중앙행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모두 포함한 금액

2

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사업개요

- (사업목적) 지역대학을 활용하여 지역자원을 콘텐츠화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와 연결을 통한 준비된 로컬형 예비창업자 육성
- (지원내용) 지역문제 해결 의지 및 로컬콘텐츠 개발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활용하여 로컬콘텐츠창업 관련 전문 기술 및 지식 교육
- (지원규모) 6개 대학 내외
- (사업기간) 협약체결일로부터 ~ '23. 12월 31일까지
 - * 협약기간은 '24. 12. 31일 까지(단, 추후 사업 운영에 따라 협약 시 해당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기간 종료 후 성과평가 결과 '부적합' 판정 시 협약 해지)
- (지원예산) 대학별 2~5억원 차등 지원
 - * 대학별 지원규모는 지원학생 수,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성과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며, 향후 사업운영 및 협의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(지원내용)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운영, 멘토링, 전담인력, 강사인력(연구교수, 겸임교수 등 포함) 확충 등
- 기관별 역할 및 추진체계

<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추진체계(안) >



구분	업무
중소벤처기업부	- 기본계획 수립, 세부사업 계획 승인
소상공인진흥공단	-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운영성과 관리 - 주관기관 및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공모, 운영, 관리
주관기관	-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교육과정 모니터링 및 교육 운영·관리 -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성과 및 정산관리 - 공통교육 및 중앙행사(해커톤, 성과공유회 등) 운영
수행기관(대학)	- 로컬콘텐츠 중점대학별 교육프로그램 개발·운영 - 교육생 관리 - 교육 성과관리

3

주관기관 의무 및 역할

< 유의사항 >

- 최종 선정된 기관은 각 과업 이행 시, 소상공인 언·컨택트 교육 사업 운영지침 및 매뉴얼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 이행하여야 함(추후 협약 시 제공)

1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사업운영

- (사전교육) 수행기관(대학) 및 교육생 등 사업참여자 대상 합동설명회 추진으로 사업이해도 제고 및 사업운영 기반 마련
- (해커톤) 전국 단위 교육생을 대상으로 로컬콘텐츠 창업 아이디어 해커톤 진행하여 로컬콘텐츠 사업계획 체계화 및 구체화 지원
- (통합세미나) 수행기관(대학) 및 전문가, 교육생,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통합세미나(학술대회)를 추진하여 발표 보고 등
- (교육과정 평가·관리)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안한 교육과정에 대해 평가단을 운영하여 교육과정의 적절성, 적합성, 효과성 등 평가 및 관리
- (사업홍보) 수행기관 모집, 사업성과 공유 및 확산 등 사업 전반에 대한 홍보 수행

②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성과관리

- (모니터링) 수행기관 모니터링 평가단을 구성·운영하고, 수행기관별 모니터링을 통한 추진현황 보고 등
 - (평가위원 Pool 제안) 로컬크리에이터, 콘텐츠, 창업·경영, 교육 등에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 제안(15인 내외)
- (사업관리) 수행기관별 운영결과 월별 취합·보고, 수행기관 및 교육생 관리, 수행기관 운영평가 및 이력관리, 사업 중간 및 최종보고 등
 - (KPI 개발·관리)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운영을 통한 로컬창업 등 성과창출 등을 위해 KPI 개발·관리
- (성과공유대회)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운영에 따른 성과에 대해 교육생별 로컬 사업아이템 및 BM 발표, 로컬브랜딩 등 성과공유대회 실시

③ 기타 수행 필요사항

- (사업비 정산 및 보고) 공단에서 제시하는 편성 기준에 따라 사업비 편성·집행하고, 공단으로 정산보고서 등 성과품 제출
 - * 수행기관 및 주관기관 사업비 집행에 대한 외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증빙서류 보완, 불인정,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
- (현장점검) 수행기관과 교육생의 제재기준 위반 여부 점검 및 교육품질 제고를 위한 현장의견 수렴
- (우수사례 발굴)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학점 취득 후, 교육 수료자 중 참여 성실도, 교육 후 성과창출 등을 고려하여 BP사례 발굴 및 관리
 - * 추후 주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KPI 설정 예정(예: 로컬창업 부전공 학위인정 및 로컬창업 사업계획서 도출(400~500명))

- (사업제언) 사업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사업계획 개선점 등 제언
 - 수행기관, 전문가, 교육생 등 사업 관계자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취합 후 월간 보고하고, 최종 결과보고 시 차년도 사업 제언 등
- (기타 사업지원) 간담회, 운영위원회, 민원대응, 관계자 현장방문 시 대응 등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업무 수행

4 사업비 지원안내

□ 사업규모 : 총 28억원, 1개 주관기관 내외

※ 수행기관(대학) 교육비, 수행기관 운영비,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통합교육 및 행사비, 주관기관 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모두 포함한 금액

□ 지원내용 및 편성기준

- 직접비는 총 사업비의 80% 이상으로 편성, 간접비는 아래 항목 중 필요한 항목만 반영하여 총 사업비의 20% 미만으로 편성할 것

< 주관기관 배정예산 구성(안) >

비목	구분	지원내용	예산
직접비	로컬콘텐츠 중점대학 교육비	• 로컬콘텐츠 중점대학별 교육 운영 등	20억원 내외
	교육생 공통 교육비	• 사전교육, 해커톤, 통합세미나, 성과공유대회 등	8억원 내외
간접비	주관기관 운영비	• 인건비, 일반수용비, 여비, 회의비 등	8억원 내외

* 향후 사업운영 및 협의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- (인력구성) PM(1인)은 사업 프로젝트 총괄을 담당하는 실무자 (50% 이상 참여)로 구성하며, 사업수행을 위해 본 과업 수행인력은 창업·교육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자를 50% 이상으로 구성

5

선정절차 및 평가기준

□ 선정규모 : 1개 기관

- ※ 주관기관을 신청하는 기관은 전국 단위의 대학(교육생)을 관리하여야 함
- ※ 선정평가 결과 적합한 기관이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

□ 선정절차 및 일정(안)

< 선정절차 및 일정 >



* 향후 사업운영 및 협의 내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

□ 평가기준

○ (평가대상) 공모 참여 기관 중 자격요건 적합 기관에 한하여 평가

검토요건		검토결과
기본요건 충족 (서류평가)	모집기준 부합 여부	적부판정
	필수서류 제출 여부	

○ (평가 방법) 심사는 사업계획서 발표평가로 진행되며, 신청기관은 사업책임자(PM)가 평가지표에 따라 사업계획서(별도 PT자료 포함) 발표

< 발표평가 유의사항 >

- ※ 신청기관은 **사업책임자(PM)**가 평가에 참석하여 직접 발표하고 질의에 답하여야 함
- ※ 평가시간은 30분(발표 20분, 질의응답 10분) 내외로 진행하고 평가장은 최대 2인까지 참석 가능하며, 코로나19 상황 및 평가 운영에 따라 평가시간, 평가방법 변동 가능
- ※ PM은 동 사업 프로젝트 총괄을 담당하는 실무자(**50% 이상 참여**)로서, 공고일 기준 신청 기관에 재직 중인 자여야 함(**평가 당일 재직증명서, 신분증 지참 필수**)

- **(평가위원회)** 심사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
 - 최종 평가 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 점수의 평균값으로 산정(예 : 평가위원이 총 7인일 경우,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5인 점수의 평균값)
 - 최종 평가 점수가 소수점 이하 발생 시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
 - 평가위원회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신청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
- **(선정방법)** 산술평균 평가점수 **80점 이상 득점 기관 중 고득점 순으로 전문기관 선정**(80점 미만인 기관은 선정에서 제외)
 - *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 우선 선정(사업 수행전략 부문-사업운영관리 부문-사업이해도 부문順)

< 주관기관 선정 평가기준 >

평가항목			평가배점	
정량평가		-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	10점	20점
		-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·성과	10점	
정성평가	사업이해도	- 본 사업목표 및 과업에 대한 이해도	10점	10점
	사업수행전략	- 사업 수행체계 및 투입인력	10점	10점
		- 공통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의 구체성과 적절성 : 사전교육, 해커톤, 통합세미나(학술대회), 성과공유대회 등	25점	25점
		- 사업추진 전략 및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운영 목표달성(실적 등) 계획의 우수성 - 사업 추진계획(수행기관(대학) 및 교육생 운영·관리, 교육과정 모니터링 등)의 구체성 및 우수성	20점	20점
	사업운영관리	- 사업 성과 극대화 전략	5점	15점
		- 추진일정, 예산편성의 구체성 및 적절성	10점	
가점		- 제시된 과업 외 추가 제안사항의 매력도 및 실현 가능성 - 전국 업무수행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여부	5점	5점
합계				105 점

□ 신청자격

- (신청요건) 아래 요건에 부합하고 전문가, 지원인프라 등을 보유하고 연계 가능한 로컬사업 등을 수행하는 별도의 조직·사업 및 공간 운영

구 분	세부 모집기준
공공 기관·단체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기관 •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기관 • 「지방출자·출연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기관 • 국가·지자체 등에 재정지원 또는 임원선임 등 승인을 받은 공공성을 지닌 기관·단체
민간 기관 (단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산학협력법」에 따른 기술지주회사, 「벤처기업법」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, 「벤처투자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(엑셀러레이터) • 상기 기준에 준하는 일반기업,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·협회·단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, 일반기업의 경우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부터 마감일 전까지 기간 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(또는 기업어음)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(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,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)을 기준으로, '기업신용평가등급'이 "B" 이상일 경우에만 사업에 참여 가능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·협회·단체 등 •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

□ 신청 제외 대상 : 아래 제한요건에 해당 시 참여 불가

-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,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
- 국세·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
-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·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
-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부도, 화의,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
-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
-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
-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성장지원사업 '협약 해약' 판정을 받은 경우
-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□ 신청·접수기간 : 2023. 1. 18(수) ~ 2023. 2. 1(수), 12:00까지 “접수완료”

□ 신청방법 : 소상공인 언·컨택트 교육 메일(startup@semas.or.kr) 송부

* 향후 선정 이후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등록 必

□ 신청서류 : 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

구분	제출서류명	제출수량	비고
1	신청서	1부	서식 1
2	사업계획서	1부	서식 2
3	사업자등록증명원	1부	-
4	법인등기부등본	1부	-
5	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	각 1부	-
6	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	1부	-
7	실적증명서	각 1부	서식 3
8	참여인력 이력사항(재직증명서 첨부)	각 1부	서식 4
9	서약서	1부	서식 5
10	개인정보 수집·이용 제공 동의서	1부	서식 6
11	발표자료	1부	자체 양식

* 신청 마감일 이후에는 제출한 자료의 수정·보완·교체 및 추가 제출은 절대 불가

7

유의사항

- 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, www.gosims.go.kr)을 통해 사업 등록→교부→집행→정산→반납→정보공시 등 일체 의무이행
- ② 신청 마감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
* 제출서류 등에 누락·착오가 있더라도 신청마감일 이후 수정·보완·교체 등 일체 불가
- ③ 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, 이상 발견 시 탈락처리하며 선정 이후라 할지라도 선정 및 협약 취소,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- ④ 동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
- ⑤ 선정된 기관은 공단의 보안 요청을 준수하여야 함
- ⑥ 전문기관은 사업비(정부지원금)에 대한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을 필히 제출하여야 함
- ⑦ 평가일정 및 결과는 개별통지(전자메일 등)하며, 신청기관 미확인·착오로 인한 평가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
- ⑧ 동 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반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자(연락처, 담당자명)에게 확인하여야 하며, 그 외 비공식적인 경로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
- ⑨ 신청 및 선정기관은 소상공인 언·컨택트교육 운영지침,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
- ⑩ 사업 운영 기간 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을 중도 해약할 수 있음
- ⑪ 사업 선정 후,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, 정부 지원금 환수 및 향후 동 사업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- ⑫ 중소벤처기업부 성장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관은 신청 불가
- ⑬ 모집공고 및 신청서식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본 게시글을 통해 공지될 예정임

8

문의처

○ 유선문의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실(042-363-7730, 773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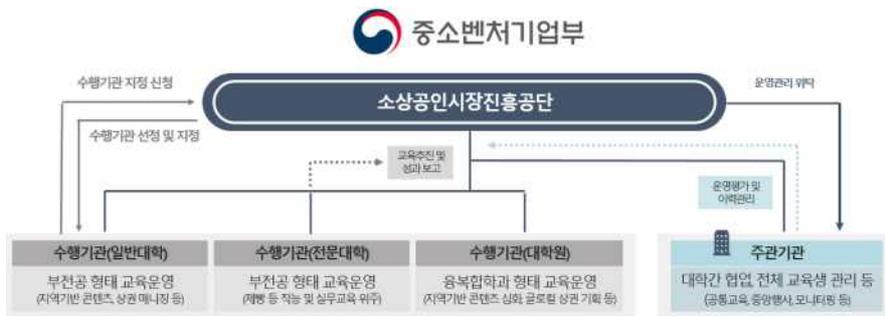
참고

2023년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추진 개요(안)

대학 내 수업을 통해 자신만의 개성과 지역자원의 특성을 결합한 차별화된 로컬 콘텐츠를 개발하고, 로컬창업에 필요한 체계적 계획 및 현장 경험을 갖춘 잠재력 있는 창의적 예비창업자 육성

□ 사업개요

- 선정규모 : 6개 대학 내외
- 사업기간 : 협약체결일로부터 '23. 12월 31일까지
 - * 협약기간은 '24. 12. 31일 까지(단, 추후 사업 운영에 따라 협약 시 해당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기간 종료 후 성과평가 결과 '부적합' 판정 시 협약 해지)
- 지원예산 : 20억 내외(각 대학별 2~5억원 차등 지급)
 - * 대학별 지원규모는 지원학생 수,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성과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며, 향후 사업운영 및 협의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지원내용 :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운영, 멘토링, 전담인력, 강사인력(연구교수, 겸임교수 등 포함) 확충 등
- 추진체제도



□ 평가 및 선정방법

- (1단계, 서류평가) 평가지표에 따라 사업계획서 서류 평가 실시
 - *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.평가 후 미충족 시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 처리
- (2단계, 발표평가)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발표평가(수행계획 등) 실시
 - * 서류평가 결과, 일정 점수 이하 득점 기관은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
- 추진일정 * 향후 사업운영 및 협의 내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

(1단계) 서류평가	(2단계) 발표평가	최종선정 및 통보	협약체결
기본요건 충족여부 (공단)	발표(PT)평가 (평가위원회)	결과 통보	협약일로부터 (2년간)
'23. 2월 초	'23. 2월 초	'23. 2월 중	'23. 2월 말